

大田直轄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490
----------	-----

提案年月日：1994年 11月 日

提案者：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

1. 提案理由

- 이 條例는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設置等과 關聯하여 1992.4.28 全文改正하였으나
- 都市計劃委員會 構成人員 및 市·道議會 議員을 都市計劃委員會 委員으로 委囑하는 事項과 委員數 選定基準 一部를 明示하여 都市計劃法 施行令이 1992.7.1 改正되어 一部 條項을 合理的으로 改正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- 委員會 委員中 市議會 議員을 包含토록 하며, 市議會 議員과 公務員이 아닌 委員數를 3분의 2 以上으로 하도록 함.
(案 第4條 第3項)
- 表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일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함.
(案 第6條 第3項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위원은” 을 “위원은 시의원”으로 실국장“과”를 실국장 “및”으로 “당연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 제3항 중 “때 결정권을 갖는다”를 “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은 직할시의 관계 실·국장과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<u>당연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등)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일 때 <u>결정권을 갖는다.</u></p>	<p>제4조(구성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위원은 시의원과 ----- 및 ----- -----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<u>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등) ①-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때에는 <u>부결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조례 제 호)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<u>시행한다.</u></p>